통권 485호

2024 01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4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관련 기사 33면)

지난 2023년 12월 18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본소와 대검찰청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소를 방문해 갖게 된 이번 협약을 통해 상담소와 대검찰청 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공 : 공정한 판단
정 : 정정당당한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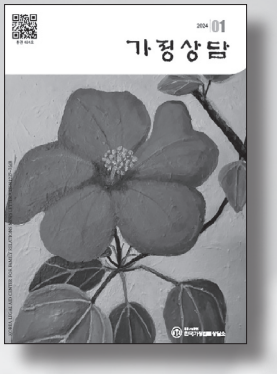

4 • 새해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총결산
11 • 특집 ❷ |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25 • 가정폭력상담실
28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각각의 계절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4. 1.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그림 **이현혜** 평생회원 〈창성동 하와이 무궁화〉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겪는 가정과 함께

언제나 한결같은 상담소, 창립 68주년의 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창립 68주년의 해를 시작하면서 시인 두보의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0 나이를 뜻하는 "고희(古稀)"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6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뜬 시인의 시대에 70살 나이가 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만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 나이 70은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을 맞이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1956년 문을 연 상담소의 역사는 특별합니다. 더욱이 당시 여성과 가정, 인권과 법률을 중심에 놓고 시작하여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는 역사를 채워가고 있는 상담소를 생각하며 자부심을 품고 다시 한번 상담소의 사명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써 상담소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법률상담, 가정문제 전문 상담을 시작해 가족구성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과 가족법개정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고 전국업무협력기관과 합심해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상담소의 창설이념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이루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과 사회 민주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가정 그리고 상담소는 언제나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인구조절이 주요한 이슈이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대가족 중심의 농촌 경제 시대를 살던 이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이들이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에서도 가정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담소 또한 창설자로부터 비롯된 희생과 헌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그리고 창립 이후 30여 년이 지나서 시작된 국가로부터의 예산 일부 지원 등 운영 면에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다만 상담소 구성원들의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헌신은 변함없으나, 오로지 민간 단체라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상담소의 역사적 맥락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잣대나 기준을 강요받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이들, 화상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번민을 나누고 해답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상담소는 힘을 내야 합니다.

또한 상담소는 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해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와 호주제 폐지 그리고 가정폭력특례법의 도입 등을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왔습니다. 상담소의 이러한 활동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상담소 홈페이지 중 가족법개정운동 면에는 우선 시급한 가족법개정을 위한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권 인정',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인정', '상속 시 배우자의 선취분 인정' 그리고 '부성주의원칙 개정'과 '친생추정조항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상담소의 방향과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가정과 그 안에서 복리를 누리는 모든 가족구성원을 품는 일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어떠한 새로운 가정의 모델을 제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화에도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고, 형태는 달라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상담소 앞에 놓인 상담소의 길입니다. 고희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상담소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저 이 길은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가야 할 길이었기에 돌아보지 않고, 돌아볼 여유도 없이 걸어 왔을 뿐입니다. 걸어 오니 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해도 걸어갈 것입니다.

상담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께서도 새해 건강하고 가정마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특집 ❶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총결산

1월

2일 시무식

5일 KBS 시사직격과 워킹맘들의 육아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인터뷰/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시작

12일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권지연 상담위원

17~19일 전국 초중고 교원 대상 온라인「법과 생활」교원직무연수

26일 2023년 라디오 광고 기획회의/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7일 상담소 내부 감사/한미영 감사, 최문원 감사
애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교육 출장상담/
조은경 상담위원

30일 법무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무협의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267건

2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8일 마포 애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조은경 상담위원

10일 안산지역자활센터 신용회복교육/전규선 상담위원

14일 뉴스토마토와 친생추정조항과 출생신고 문제에 관한 인터뷰/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1일 2023년 라디오 광고 녹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2일 본소 변호사 회의

23일 정기 전기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의 조건"/김병후 원장

24일 자원봉사학생 교육/조은경, 박상진 상담위원

28일 자원봉사학생 교육/조은경, 박상진 상담위원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4,594건

3월

8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복미영 상담위원

17일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22일 2023년도 법관연수 –가정보호·아동보호재판실무– 참여법관 대상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 오프라인 및 원격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3일 정기총회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너의 의미"/김병후 원장
여의나루역 진재옥 역장과 법의 날 기념 캠페인을 위한 사전협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29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30일 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신용회복교육/전규선 상담위원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본소 총 상담 4,761건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참석 및 서울구치소 방문/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0일 서울가정법원 제7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4일 제60회 법의 날 기념 '출장법률상담 및 교육 행사
– 무료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5호선 여의나루역)

17일 서울경찰청 서울시학대예방경찰관 대상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의 대응방안"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8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복미영 상담위원

19일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과 면담/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0일 법률구조공단 실무자 및 전산관련 ISP용역업체 수행팀과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
곽배희 소장 이하 직원

25일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대통령 표창),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27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는 과학이다"/
김병후 원장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843건

5월

15일 서울경찰청 서울시학대예방경찰관 대상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의 대응방안"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7일 숭의여중 폭력예방교육/박상진 상담위원

18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현장상담원 역량강화교육(한부모가족관련법률)/김진영 상담위원

1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복미영 상담위원

20일 한국젠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4일 창립 67주년 및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 방향' 개최

이레가정폭력상담원 법률구조체험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26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협의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천다라 상담위원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조건인 자율성"/김병후 원장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994건

6월

12일 서울가정법원 주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가족법 강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김진영 상담위원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초청으로 대검찰청 방문/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9일 서울가정법원 주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가족법 강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1일 호암재단 주최 호암상 시상식 참석/곽배희 소장

22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관계에서의 상처"/
김병후 원장

23일 구리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가족법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26일 부성주의 원칙 규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서울가정법원 주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가족법 강의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7일 한겨레21과 출생등록제와 친생추정조항 등 관련 인터뷰/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9일 대검찰청 김상민 공판2과장과 박찬영 검사 본소 방문 및 실무자협의회/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박슬기 변호사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577건

7월

6일 법무부 방문 및 한동훈 장관과 면담/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비전임교원)로 채용되어 2023년 2학기에 「리갈 클리닉 II」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2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설명회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17일 서울가정법원 주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가족법 강의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8일 동국대학교 법률구조 현장체험교육

27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공감능력"/김병후 원장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본소 총 상담 4,997건

8월

4일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개최한 민간 법률구조사업 간담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현옥 재무회계과장, 김민선 변호사

14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천다라 상담위원

17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8일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에서 "가족법의 변화 그리고 가정폭력" 비대면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3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김민선 변호사

24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김병후 원장

25일 서영교의원실과 전국여성법무사회 공동주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공익소송 및 법률복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김민선 변호사

28일 2023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31일 서울경찰청 서울시학대예방경찰관 대상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의 대응방안"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동국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본소 총 상담 4,567건

9월

6일 부산시거점센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대상 법교육/복미영 상담위원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리갈 클리닉Ⅱ」개강 첫 수업 진행/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동수 국회의원과 면담/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2일 서울경찰청 서울시학대예방경찰관 대상 "가정폭력관련 법령 및 경찰의 대응방안" 강의/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3일 부산시거점센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대상 법교육/복미영 상담위원

14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15일 이화여대 리갈클리닉Ⅱ 수업 강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9일 본소,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시설 실무자들 대상 신용회복제도 교육 실시/전규선 상담위원

20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가족법교육/김진영 상담위원

22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김병후 원장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주관 '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매뉴얼' 개정을 위한 본소 피해자 지원절차 및 내용 관련 회의 서면 자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가정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5,018건

10월

13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7일 「검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회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김민선 · 박슬기 변호사

18~31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리갈클리닉 Ⅱ」수강생들의 상담참관 수업 진행/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5일 서울서부지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등 5개 경찰서의 피해자전담 경찰관 본소 방문/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26일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이란 무엇인가”/김병후 원장

2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및 권역 실무자들 상담소 방문 및 간담회 실시/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전규선 상담위원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김민선 변호사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351 건

11월

14일 공익소송 협업 구축을 위해 대검찰청 정유미 공판송무부장 등 관계자 본소 방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가족법교육/
복미영 상담위원

15일 서울가정법원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참석/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7일 니노미아 슈헤이 리츠메이칸 대학교 명예교수 등 일본 교수단 본소 방문/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22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임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부부대화법”/김병후 원장

24일 주한미국대사관 시민업무과 Abisola James 영사 등 본소 방문 및 법률구조지원 논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9일 정기후기이사회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687건

12월

6일 법무부 공공기관 청렴컨설팅/김진영 상담위원

8일 서울대 아동학과 법률구조체험교육/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14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5일 이태영 선생님 25주기
영등포 자원봉사센터 간담회 참석/조은경 상담위원

18일 「검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일자리지원센터 신용상담/전규선 상담위원

21일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김민선 변호사

28일 직원 송년모임

가정법원 출장상담, 가정법원 조정

본소 총 상담 4,028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김 상 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21년 민법일부개정[1]으로 징계권에 관한 민법 제915조[2]가 삭제되었다. 이 규정이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입법자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면,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기대에서 출발한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첫째, 징계권에 관한 규정이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개정 전에도 징계권의 행사가 친권남용에 해당하면 민법 제924조 이하 규정에 따라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3] 따라서 징계권 규정이 친권남용에 의한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주장은 개정 전 민법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4] 둘째, 징계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현재의 법상태에서는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친권자가 아무런 징계도 할 수 없는가에 대

* 2023년 11월 22일 본소에서 열렸던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상용 교수(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원고.

1) 법률 제17905호. 2021년 1월 26일 시행.

2)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김주수 김상용,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18, 437면; 안영하,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 친권남용 및 친권제한과 관련하여 –",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2018. 12.) 201면;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규정의 개정과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1호(2020), 58면; 대판 1969. 2. 4. 68도1793(피고인이 만4세인 그 아들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민법 제915조가 말하는 친권자가 그 아들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2. 2. 8. 2001도6468(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다).

4)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행사의 대원칙으로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제915조에 따른 징계권의 행사 역시 친권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한 것이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징계권 행사의 해석에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규정이 2015년 신설된 이후에도 한국은 2019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의 신설에 의해서 한국이 체벌금지 국가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한 의문이다.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친권에 근거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인데, 개정법은 징계권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데 그침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하여 두고두고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2021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한 징계권 삭제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고, 징계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징계권의 삭제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논한다. 이어서 징계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징계권 삭제의 의미에 대한 검토

1. 자녀에 대한 징계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징계권의 삭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에서 '징계'의 사전적 의미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표준국어대사전)이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의 허물이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징계의 범위는 매우 넓은 것으로 해석되며, 체벌과 같이 무거운 의미의 제재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무라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벌(예를 들면 게임을 금지시키거나 용돈을 삭감하는 것, 위험한 물건을 빼앗는 것 등)을 주는 것도 징계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5] 징계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징계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징계권의 삭제가 친권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징계를 금지하는 취지라면,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저 수수방관하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뜻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징계권의 삭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징계가 곧 부모의 체벌이라고 이해한 듯한데, 이는 징계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혀 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보다 앞서 민법전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독일의 예와 비교해 보면 이점은 좀 더 명확해진다. 우리가 보통 징계라고 번역하는 독일어의 "Züchtigung"은 원래 체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6]("Züchtigung"의 동사인 "züchtigen"은 때려서 심하게 벌을 준다는 의미이다.[7]) 이와 같이 독일어의 "Züchtigung"은 통상 징계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우리말에서의 징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무거운 체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무거운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우리 민법에서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은 체벌을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독일에서 징계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 민법에서도 징계권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일어의 "Züchtigung"과 우리말의 징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의 징계권 폐지를 본받아 우리 민법에 반영하려고 하였다면, 단지 징계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징계수단 중에서 특히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

2. 징계권의 삭제는 곧 체벌의 금지를 의미하는가?

아동학대방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2020-2021년 개정 당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주로 체벌금지를 염두에 두고 징계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권을 삭제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이

5) 독일민법 제1631조 제2항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벌도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üKoBGB/Huber BGB 9. Aufl. 2024, § 1631 Rn. 26. "§ 1631 Abs. 2 spricht kein allgemeines Bestrafungsverbot aus."

6) 독일어에서 "Züchtigung"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체벌을 의미한다. Coester, Elterliche Gewalt, in: Hoffer/Klippel/Walter(Hrsg.), Perspektiven des Familienrechts, FS für Schwab 2005, S. 75; BT-Drucks. 14/1247, S. 7.

7) züchtigen: durch Schläge hart strafen. 출처: Duden Das Bedeutungswörterbuch.

금지되고, 이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개정의 동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녀를 적절히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친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1979년)로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스웨덴의 예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좀 더 명료해진다.

스웨덴에서는 1966년에 친자법에서 부모의 징계(reprimand)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이 개정에 의해서 부모의 모든 체벌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8] 법전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 1966년 개정 이후에도 스웨덴의 주류 학설은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법원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였다.[9] 체벌의 금지 여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불명확한 법상태가 지속되면서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가혹하게 자녀를 체벌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스웨덴 의회는 이와 같이 모호한 법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체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1979년에 친자법을 다시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스웨덴친자법 제6장 제1조 후단).

스웨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에 관한 규정의 삭제가 곧 체벌의 금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민법일부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체벌을 금지하려는 데 있었다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징계권의 삭제와 체벌금지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징계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스웨덴

(1) 1949년 친자법 개정

스웨덴에서도 전통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권이 인정되어 왔다. 1920년에 제정된 스웨덴친자법은 부모의 자녀 처벌권(right to punish)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부모의 '처벌권'이라는 법률용어는 가혹한 체벌이 널리 행하여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10] 그 결실로 1949년에 스웨덴친자법이 개정되었는데, 가혹한 체벌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처벌(punishment)"이라는 용어를 "징계(reprimand)"로 대체하였다.[11] 그러나 형법전에서는 부모의 자녀 처벌권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한 경우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닌 한 -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이용되었다.[12]

(2) 1966년 친자법 개정

1949년 개정 이후에도 스웨덴에서는 부모에 의한 심각한 자녀 체벌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에서는 부모의 체벌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우선 1957년에 형법전에서 부모의 처벌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만으로는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관한 친자법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당시 스웨덴 의회에는 세 가지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첫 번째 안은 체벌의 존속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체벌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이

8) End Corporal Punishmen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Sweden.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country-reports/Sweden.pdf. 최종방문일 2023. 11. 13.

9)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p. 450-451.

10)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 448.

11) Joen E. Durrant, The Swedish Ban on Corporal Punishment: Its History and Effects,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p. 19-20.

12)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 448.

를 폐지하는 것은 가정사에 불필요한 개입이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안은 체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었다: 체벌이 명문으로 폐지되지 않으면 부모들은 계속해서 체벌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게 되고, 정부는 허용되는 체벌과 금지되는 체벌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안은 체벌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명문으로 금지하지도 않되, 법전에서 체벌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삭제하는 방안이었다.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조치가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스웨덴 의회는 1966년에 세 번째 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친자법에서도 부모의 체벌권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13]

(3) 1979년 친자법 개정

스웨덴 의회는 체벌과 관련된 규정을 법전에서 전부 삭제한 1966년 개정이 곧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와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체벌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스웨덴의 주류 학설 역시 1966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체벌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해석하였다.[14] 1975년에는 법원 또한 이러한 학설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세 소녀가 부(父)로부터 구타당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그러한 부의 행위가 딸을 징계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15]

이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 의회는 1977년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8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고,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체벌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체벌 금지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지 법전에 징계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16]

스웨덴 의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259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친자법 제6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자녀는 돌봄, 안전, 양질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는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그밖에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17]

(4) 개정의 효과

친자법에 도입된 체벌금지 규정이 스웨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처음부터 중요한 의제였다. 스웨덴 의회와 정부는 그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체벌을 가한 부모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홍보를 통하여 체벌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를 도모하였다.[18]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와 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과 체벌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일례로 2개월간 우유갑에 체벌금지 규정을 인쇄하여 각 가정에 배달하였다).[19] 그 결과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인

13) 스웨덴 의회가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여론이 체벌금지를 지지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1965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성인의 53%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 449.

14)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 450.

15) Joen E. Durrant, The Swedish Ban on Corporal Punishment: Its History and Effects,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 21

16) Dennis A. Olsen, The Swedish Ban of Corporal Punishment, BYU Law Review, Volume 1984, p. 452.

17) "Children are entitled to care, security, and a good upbringing. Children shall be treated with respect for their person and individuality

18) Klaus A. Ziegert, The Swedish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y, Nov., 1983, Vol. 45, No. 4, p. 920; Joen E. Durrant, The Swedish Ban on Corporal Punishment: Its History and Effects,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 21; BT-Drucks. 14/1247, p. 7.

지도가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벌에 대한 의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체벌금지에 대한 인지도(스웨덴에서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는 1971년 60%에서 1981년 99%로 상승하였다. 1971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35%의 응답자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1981년에 이 비율은 26%로 감소하였으며, 1994년에는 11%로 줄었다.[20] 1979년 개정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 전(1971년)에는 약 3분의 1이 체벌에 찬성하였으나, 개정 후 15년이 경과한 1994년에는 약 10분의 1만이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이 1979년에 친자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목적은 스웨덴 국민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시키려는 데 있었는데, 그 후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그 후 다른 나라의 입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 오스트리아

(1) 1811년 오스트리아민법 시행 당시

1811년 오스트리아민법 제145조는 부모의 징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가 부도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내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자녀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할 권한이 있다."[21] 징계의 수단은 부모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체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징계가 과도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징계권의 남용)에는 오스트리아형법 제41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제414조 및 제415조에 의하여 친권상실이나 부모와 자녀의 격리가 가능하였다.[22] 즉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자녀의 복리는 징계권 행사의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2) 1977년 친자법개정

1977년 친자법개정[23]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민법전에서 징계권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개정 논의의 초기단계부터 "징계(Züchtigung)"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체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24] 결국 징계권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명확하게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지 않았다(제146조a: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명령과 그 관철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 발달 및 인격을 고려하여야 한다."[25]).

---

19) Joen E. Durrant, The Swedish Ban on Corporal Punishment: Its History and Effects,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 22.

20) Klaus A. Ziegert, The Swedish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y, Nov., 1983, Vol. 45, No. 4, p. 921; Joen E. Durrant, The Swedish Ban on Corporal Punishment: Its History and Effects,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 23; 1965년에는 응답자의 53%가 자녀양육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Ake W. Edfeldt, The Swedish 1979 Aga Ban Plus Fifteen, in Detlev Frehsee, Wiebke Horn and Kai-D. Bussmann eds.,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De Gruyter, 1996, p. 35.

21) "sie sind auch befugt, unsittliche, ungehorsame oder die häusliche Ordnung und Ruhe störende Kinder auf eine nicht übertriebene und ihrer Gesundheit unschädliche Art zu züchtigen."

22) Klang/Bartsch,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I, erster Halbband, 1933, § 145, S. 866.

23) BGBl 1977/403(Bundesgesetz vom 30. Juni 1977 über die Neuordnung des Kindschaftsrechts). 1978. 1. 1. 시행.

24) Posch, Zur Neuregelung der „rein persönlichen" Rechtsbeziehungen zwischen Eltern und Kindern nach dem BG 30.6.1977 BGBl 403, in: Ostheim(Hrsg.), Schwerpunkte der Famillienrechtsreform 1977/1978: Entscheidungshilfen für die Praxis, 1979, S 17f.

25) "Das minderjährige Kind hat die Anordnungen der Eltern zu befolgen. Die Eltern haben bei ihren Anordnungen und deren Durchsetzung auf Alter, Entwicklung und Persönlichkeit des Kindes Bedacht zu nehmen."

1977년 개정은 체벌에 대해서 사실상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26] 명확하게 체벌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후에도 자녀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체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했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27]

(3) 1989년 친자법개정 체벌의 절대금지 규정 도입

1977년 친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체벌의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28] 결국 1989년 친자법 개정[29]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제146조a: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명령과 그 관철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 발달 및 인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폭력의 사용,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30]).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스웨덴(1979), 핀란드(1984), 노르웨이(1987)에 이어 양육에 있어서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다.[31]

(4) 개정의 효과

197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3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대답하였으며, 1984년에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양육과정에서 체벌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32] 체벌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인 1991년에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모의 34.5%(가벼운 체벌 30.5%, 무거운 체벌 4%[33]), 부의 23.2%(가벼운 체벌 17%, 무거운 체벌 5.2%)가 양육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한 2008년에 실시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는 모의 5.8%(가벼운 체벌 4.1%, 무거운 체벌 1.7%), 부의 3.3%((가벼운 체벌 2.2%, 무거운 체벌 1.1%)만이 체벌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여 체벌의 사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34] 또한 설문에 응한 부모와 아동의 약 90%가 폭력 없는 양육이 이상적인 양육모델이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민법에 체벌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된 이후 체벌이 감소하고, 폭력 없는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 확산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법개정만으로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부모교육에 중점을 두고 양육에 관

---

26) Posch, Zur Neuregelung der „rein persönlichen" Rechtsbeziehungen zwischen Eltern und Kindern nach dem BG 30.6.1977 BGBl 403, in: Ostheim(Hrsg.), Schwerpunkte der Famillienrechtsreform 1977/1978: Entscheidungshilfen für die Praxis, 1979. S 18f;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3

27) Schwimann, Kindesunterhalt und elterliche Gewalt, in: Floretta(Hrsg.), Das neue Ehe- und Kindschaftsrecht, 1979, S. 165.

28)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3; Schwimann, Kindesunterhalt und elterliche Gewalt, in: Floretta(Hrsg.), Das neue Ehe- und Kindschaftsrecht, 1979, S. 165.

29) BGBl 1989/162(Kindschaftsrecht-Änderungsgesetz — KindRÄG). 1989. 7. 1. 시행.

30) "Das minderjährige Kind hat die Anordnungen der Eltern zu befolgen. Die Eltern haben bei ihren Anordnungen und deren Durchsetzung auf Alter, Entwicklung und Persönlichkeit des Kindes Bedacht zu nehmen. Die Anwendung von Gewalt und die Zufügung körperlichen oder seelischen Leides sind unzulässig."

31) 이로써 오스트리아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은 물론이고 모든 억압적인 양육수단은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aleczky, Zur Strafbarkeit der G`sunde Watschen, ÖJZ 1993, 626.

32) Schreiber, Familiale Gewalt in der Erziehung, 2016, S. 164f. https://www.gaismair-gesellschaft.at. 최종방문일 2023. 11. 13.

33) 가벼운 체벌에 해당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기, 가볍게 따귀 때리기 등이며, 도구를 이용한 구타 등은 무거운 체벌로 분류된다.

34)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35.

한 안내책자를 배포하였으며,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부모, 자녀, 가족, 양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행사에는 심리학, 의학,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부모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스웨덴의 예를 본받아 오스트리아 정부 역시 사회에서 체벌금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35]

3. 독일

(1) 독일민법 제정 당시

1896년 독일민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징계권은 독일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자녀의 양육수단으로 인정되어왔다.[36] 이러한 전통을 반영하여 1896년에 제정된 독일민법은 제1631조에 징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자녀의 신상에 대한 친권은 자녀를 양육, 감독하며 거소를 지정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부(父)는 양육권에 의거하여 자녀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부의 청구에 따라 후견법원은 적절한 징계수단[37]을 사용하여 부를 지원할 수 있다."[38] 당시 독일민법 제1627조는 부를 자녀의 단독친권자로 규정하였으므로,[39] 친권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징계권 역시 부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징계 여부나 구체적인 징계의 방법은 부에게 맡겨졌다. 제1631조에 따른 징계수단으로는 주로 체벌 이외에 경고, 질책, 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40] 양육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징계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어 후견법원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후견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적당한 가정에 위탁양육을 명하는 것 등)를 취할 수 있었다(1896년 독일민법 제1666조).

(2) 1957년 남녀동권법 시행에 따른 징계권의 삭제

남녀동권법[41]에 의해서 독일민법 제1631조에서 징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독일민법은 친권이 부에게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남녀동권법의 시행에 따라 이제 부와 더불어 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친권에 관한 부분에서 남녀동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1631조도 개정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때 부의 징계권에 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부에게만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서독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부의 징계권 삭제는 징계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제 부뿐만 아니라 모에게도 동등하게 징계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42] 징계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

3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20.

36) Coester, Elterliche Sorge-die Entwicklung der letzten 40 Jahren, in: Götz/Schnitzer(Hrsg.), 40 Jahre Familierechtsreform, 2017, S. 249. 적절한 징계수단이 양육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생각은 19세기는 물론 독일민법 제정 당시와 그 후에도 오랜 기간 의심의 여지없는 원칙이었다.

37) 후견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수단으로는 소환, 경고, 양육시설 또는 감화원 입소 명령 등이 있었다.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4. Aufl. 1929, § 1631, S. 459.

38) "Die Sorge für die Person des Kindes umfaßt das Recht und die Pflicht, das Kind zu erziehen, zu beaufsichtigen und seinen Aufenthalt zu bestimmen. Der Vater kann kraft des Erziehungsrechts angemessene Zuchtmittel gegen das Kind anwenden. Auf seinen Antrag hat das Vormundschaftsgericht ihn durch Anwendung geeigneter Zuchtmittel zu unterstützen."

39) 모는 예외적으로 부가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1896년 독일민법 제1684조).

40)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8. Aufl. 1950, § 1631, S. 1494.

41) Gesetz über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auf dem Gebiete des bürgerlichen Rechts(Gleichberechtigungsgesetz vom 18. 6. 1957). 1958. 7. 1. 시행.

42) Paulick, Das Eltern-Kind-Verhältnis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Gleichberechtigungsgesetzes vom 18. Juni 1957, FamRZ 1958, 5.

에서 사라졌으나, 부모의 체벌권은 양육권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권리로 이해되었다.[43] 남녀동권법에 따른 친권법 개정의 목적은 친권의 영역에서 부모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었으며, 자녀의 지위향상은 입법자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44]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모의 체벌권은 이전과 다름없이 인정되었다.[45]

결과에 있어서 징계권에 관하여 내용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부모는 전과 다름없이 체벌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재수단 외출금지, 감금, 용돈삭감, 물건압수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3) 1979년 친권법 개정[46]

1970년대 후반에 친권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민법에 징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독일의회는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였다.[47] 그 대신 타협으로 제1631조 제2항에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양육수단은 금지된다"[48]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독일사회는 폭력 없는 양육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으나, 이 규정이 가정에서의 체벌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49] 체벌이 명문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벌 그 자체는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이 학설과 판례의 주류를 이루었으며,[50] 이에 따라 부모의 체벌은 계속해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4) 1997년 친자법 개정

1990년대 초반에 독일의 입법자들은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하였다. 독일은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는데, 동 협약은 제19조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반면, 독일에서는 여전히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1997년 친자법 개정[51]에 의해서 독일민법 제1631조는 다시 개정되었다. 제1631조 제2항은 "굴욕감을 주는 양육수단, 특히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금지된다"[52]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금지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체벌권이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학대 수준에 이르지

43) BT-Drucks. 14/1247, S. 3.

44) Huber/Scherer, Die Neuregelung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 FamRZ 2001, 797; 1965년에 서독에서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5%의 부모가 매로 때리는 것을 필수적인 양육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의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는 부모의 비율이 70%에 이르렀다. Weber, Autorität im Wandel. Autoritäre, antiautoritäre und emanzipatorische Erziehung, 1974, S. 28.

45) BGH, FamRZ 1958, 217f. 당시 독일연방대법원은 민법 제1631조 제2항에서 징계권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모의 징계권은 침해될 수 없는 관습법상의 권리라고 보았다; BT-Drucks. 2/224(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auf dem Gebiete des bürgerlichen Rechts), S, 60. 당시 개정이유서에는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해도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MünchKomm/Hinz, BGB, 1978, § 1631 Rn. 12.

46)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der elterlichen Sorge vom 18. 7. 1979(1980. 1. 1. 시행).

47) 당시 국민의 의식수준이 체벌의 전면 금지를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BT-Drucks. 8/2788, S. 35.

48) "Entwürdigende Erziehungsmaßnahmen sind unzulässig."

49) Peschel-Gutzeit, Das Kind als Träger eigener Rechte - Der lange Weg zur gewaltfreien Erziehung, Archiv frühe Kindheit, Ausgabe 2/2001, S. 3. https://liga-kind.de › fk-201-peschel-gutzeit. 최종방문일 2023. 11. 13.

50) Soergel/Lange, BGB, 11. Aufl. 1981, § 1631 Rn. 10; Palandt/Diederichsen, BGB, 48. Aufl. 1989, § 1631 5). 부모의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고 충분히 숙고한 후에 이루어지는 체벌(매질)은 1979년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적법한 양육수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MünchKomm/Hinz, BGB, 2. Aufl. 1987, § 1631 Rn. 23; BGH, FamRZ 1988, 717(부가 8살 된 딸의 엉덩이와 허벅다리를 정원용 고무호스로 4차례 때려서 피멍이 든 사건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한 것은 자녀에게 굴욕적인 양육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1) Gesetz zur Reform des Kindschaftsrechts von 16. 12. 1997(1998. 7. 1. 시행).

52) "Entwürdigende Erziehungsmaßnahmen, insbesondere körperliche und seelische Misshandlungen sind unzulässig."

않는 체벌은 1997년 개정법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손바닥 때리기 등 가벼운 체벌은 여전히 적법한 징계수단으로 해석되었다).[53]

(5) 2000년 양육에 있어서 폭력 추방에 관한 법률[54]

체벌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에 힘입어 독일민법 제1631조는 2000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55] 종전의 규정은 명확성을 결여하여 부모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넓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56] 체벌금지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제1631조 제2항은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자녀는 폭력 없는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체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밖에 굴욕감을 주는 조치는 금지된다."[57] 이 개정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독일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폭력 없는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체벌, 감금, 모욕적인 언사를 통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58] 그러나 자녀에게 벌을 주는 모든 제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 질책, 외출금지, 티브이 시청 금지, 용돈삭감 등의 양육수단은 허용된다. 또한 자녀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폭력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59]

2000년 개정에 의해서 독일민법이 시행된 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서는 늦었으나, 스페인(2007), 프랑스(2019)보다는 이른 시기에 단행된 것이다.

(6) 개정의 효과

독일의 2000년 법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60] 스웨덴의 사례에 따라 독일 역시 폭력 없는 양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61]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자녀에게 더 많은 존중을(Mehr Respekt vor Kindern)"이라는 표어하에 개정법을 홍보하고, 폭력 없는 양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 캠페인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말까지 티브이광고,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62]

2000년 법개정과 이에 수반한 폭력 추방 캠페인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따귀 때리기와 같은 경미한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1996년에는 82.8%에 이르렀으나, 이 비율은 2001년에 60.6%를 거쳐 2005년에는 47.9%까지 감소하였다. 소리 나게 따귀

53) Palandt/Diederichsen, BGB, 58. Aufl. 1999, § 1631 Rn. 9; Huber/Scherer, Die Neuregelung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 FamRZ 2001, 798; Erman/Michalski, BGB, 10. Aufl. 2000, § 1631 Rn. 8.

54) Gesetz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 vom 2. 11. 2000(2000. 11. 8. 시행).

55) Salgo, Vom langsamen Streben des elterlichen Züchtigungsrechts, RdJB, 2001, 283ff.

56) Bussmann, Das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aus juristischer und empirischer Sicht, FPR 2002, 289.

57) "Kinder haben ein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Körperliche Bestrafungen, seelische Verletzungen und andere entwürdigende Maßnahmen sind unzulässig." 이 개정에 의해서 독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의 정신이 비로소 실현되었다.

58) Kellner, Die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 nach neuem Recht, NJW 2001, 797; MünchKomm/Huber, BGB, 4. Aufl. 2002, § 1631 Rn. 23. 경미한 체벌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9) Huber/Scherer, Die Neuregelung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 FamRZ 2001, 799. 예를 들어 자녀로부터 마약이나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60) Bussmann, Das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aus juristischer und empirischer Sicht, FPR 2002, 289; BT-Drucks. 14/1247, S. 4, 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waltfreie Erziehung, 2003, S. 4.

6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Aktionsleitfaden. Gewaltfreie Erziehung, 2003; BT-Drucks. 14/1247, S. 7.

6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waltfreie Erziehung, 2003, S. 11.

때리기와 같은 무거운 체벌의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믿는 부모는 1996년에 16.8%로 나타났으나, 2001년에는 5.9%로 줄었으며, 2005년에는 2.2%까지 감소하였다.[63]

또한 2001년 설문조사 전에 양육수단으로써 체벌을 사용했던 부모의 90%가 폭력 없는 양육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체벌 없는 양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64] 체벌 대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양육수단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으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재수단은 티브이 시청 금지로 나타났다(71.5%의 부모가 티브이 시청 금지를 자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함).[65]

다수의 부모는 종래의 불명확한 법상태가 양육에서 체벌을 사용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답변하였으며, 54%의 부모는 "부모들이 징계권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법에 의해서만 명확한 경계가 획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66]

IV. 징계권 삭제의 구체적 효과 징계금지 또는 체벌금지?

1. 징계권의 삭제와 징계의 금지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모든 징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부모는 친권(양육권)에 근거하여 자녀를 적절한 범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67]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적절히 벌을 주거나 혼을 내는 일은 불가피한데, 이러한 것은 정당한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에 대한 징계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주는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징계 대신 훈육과 같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 '징계'는 자녀에 대한 강한 체벌이나 엄격한 처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야간 외출금지, 게임시간 제한,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담배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양육에 필요한 징계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징계의 과정에서 폭력의 사용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자녀의 복리라는 넓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서 담배나 마약 같은 해로운 물건을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합숙을 하고 있어서 강제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수반되는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자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꽉 잡는 행위). 요컨대 자녀의 보호 또는 자녀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폭력의 사용도 가능하다.[68]

이와 같이 민법전에서 징계권을 삭제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모든 징계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징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가이다.

6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waltfreie Erziehung, 2003, S. 16.

64) Bussmann, Das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aus juristischer und empirischer Sicht, FPR 2002, 292.

6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waltfreie Erziehung, 2003, S. 9.

6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waltfreie Erziehung, 2003, S. 14.

67) 같은 취지, 이노홍,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2015), 147면은 양육권에는 합리적 훈육권, 징계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양육권으로부터 자녀 체벌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김주수 김상용,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23, 447면;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권재문 집필 부분), 박영사, 2015, 1151면.

68) 헌재결 2021. 4. 29. 2020헌마1415 전원재판부. 모가 자녀를 훈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춘기에 이른 자녀가 반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시적인 체벌에 이른 경우 정당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징계권의 삭제와 체벌금지

2021년 민법일부개정으로 민법전에서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나, 이것이 곧 체벌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69] 징계권의 삭제 이전에도 무거운 체벌(예를 들어 소리 나게 따귀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도구를 이용한 구타 등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체벌)은 친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제924조 이하 규정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점은 징계권의 삭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즉 자녀에 대한 무거운 체벌은 징계권의 삭제 이전이나 그 후나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수단으로서 가벼운 체벌이 허용되는가이다. 예를 들어 가볍게 따귀를 때리는 행위,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또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 등이 양육과정에서 징계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권을 삭제한 2021년 개정은 아무런 구체적인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입법자가 이러한 가벼운 체벌까지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취지였다면, 단지 징계권을 삭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체벌은 금지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였어야 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을 도입했다면 체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체벌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대신 단지 징계권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체벌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현재와 같은 불분명한 법상태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한도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계속 허용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독일은 1957년에 민법전에서 징계권을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1979년, 1997년에 각각 자녀에 대한 굴욕적인 양육수단의 금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2000년에 폭력 없는 양육을 명문으로 규정하기 전까지 양육수단으로 체벌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끊이지 않았다. 스웨덴 역시 1966년에 부모의 징계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부모의 체벌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학설과 판례도 부모의 체벌이 허용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스웨덴 의회는 1979년에 다시 친자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스웨덴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오스트리아도 1977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징계권을 삭제하였으나, 징계권의 삭제가 체벌의 금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989년에 다시 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외국의 역사적 경험은 징계권의 단순한 삭제로부터 체벌의 전면 금지라는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법전에서 단지 징계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우리의 현재 법상태는 독일의 1957년, 스웨덴의 1966년, 오스트리아의 1977년의 법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는 징계권이 삭제된 이후에도 학계와 법원에서 체벌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인식은 미약했다.

2021년 개정 당시 국회 의사록을 보아도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70] 정치권에서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무언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체벌에 대한 국민의 정서[71] 등을 고려하여, ① 징계권 유지, ② 징계권 삭제, ③ 체벌금지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되는 중간 항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선택은 아동의 체벌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72] 징계권 삭제 전에도 무거운 체벌은 친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69) 장영인,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징계권 폐지의 실천적 의의와 긍정적 양육 지원",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3권 제1호(2022. 4), 80면. 징계권 폐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결과, 징계권 폐지가 모든 징계를 금지하는 것인지 훈육을 위해 필요한 징계는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70) 단지 개정이유로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71)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실시한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상황에 따라 필요: 68.3%, 필요: 6.5%, 매우 필요 2%, 필요 없음 18.2%, 전혀 필요 없음 5%). 서울경제신문 2019. 5. 23. 보도 참조.

72) 프랑스는 자녀양육에서 폭력의 사용을 금지한 2019년 민법 개정 전에도 징계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부모에 의한 체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징계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체벌이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징계권 삭제 후에도 가벼운 체벌은 전과 다름없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권을 삭제한 2021년 개정은 체벌금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거운 체벌도 처음에는 경미한 체벌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경미한 체벌도 반복되어 누적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73] 2021년 개정 시 입법자는 징계권의 삭제라는 모호한 조치 대신 체벌의 전면 금지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74] 체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벌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체벌을 금지하는 법개정은 이 모든 것들의 전제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즉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벌금지에 관한 홍보나 캠페인도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75]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2021년 징계권 삭제 이후 체벌금지에 관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76] 대부분의 국민들은 징계권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77]

체벌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통하여 양육에 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체벌금지에 관한 법개정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3. 체벌금지 입법의 효과 - 법이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체벌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국민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스만(Kai-D. Bussmann) 교수 연구팀은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5개국을 선택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오스트리아는 3월초까지) 각 나라별로 1000명의 부모(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25세 이상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다섯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나라(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스페인,[78] 프랑스[79])에서의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체벌금지 입법이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데 있었다.

먼저 체벌의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웨덴 부모의 14.6%가 가볍게 자녀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이 비율은 각각 49.9%,

73) 체벌은 자녀의 반사회적 성향을 키울 수 있고,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선호하는 학습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Bussmann, Das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aus juristischer und empirischer Sicht, FPR 2002, 289 참조.

74) 징계권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상당수 국민들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모의 60.7%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일보 2021. 4. 19. 보도;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이 2021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64%가 동의하며, 체벌을 하더라도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고(57%),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52%)고 답변하였다. 한국일보 2021. 5. 20. 보도 참조

75) 이세원,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3), 2019, 590면 이하는 징계권의 삭제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한다.

7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9. 15.), "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참조.

77) 세이브더칠드런 2022. 6. 27. 보도자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 78.8%가 징계권 삭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70%는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기 등의 일부 체벌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78) 스페인은 2007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스페인민법 제7장 제154조. 2008. 1. 1. 시행).

79) 프랑스민법에는 원래 징계권에 관한 규정도 없었고,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으나(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371-1조 제2항. 이 규정은 2019년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 개정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프랑스민법 제371-1조 제3항: 친권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L'autorité parentale s'exerce sans violences physiques ou psychologiques.").

42.6%에 이르렀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스페인 54.6%, 프랑스 71.5%). 한편 소리 나게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고 답변한 부모의 비율은 스웨덴의 경우 4.0%에 그쳤으나,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각각 18%, 12.7%였으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 비율은 현저히 높았다(스페인 31.4%, 프랑스 32.3%).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체벌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그에 수반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체벌 추방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예견되었던 결과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보다 11년 먼저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홍보와 캠페인이 미진하여 독일보다 체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80] 스페인과 프랑스는 스웨덴은 물론, 오스트리아나 독일보다도 체벌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체벌금지 규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어떠한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스웨덴 부모의 경우 2.4%만이 소리 나게 따귀 때리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이 비율은 각각 8.8%, 7.0%에 이르렀다. 반면에 당시 체벌금지 규정이 없었던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체벌이 허용된다고 답변한 부모의 비율이 각각 22.2%, 34.5%로 나타났다.[81]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따귀를 때리는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84.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비율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각각 61.5%, 57.0%로 나타났으며,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48.0%, 31.5%에 그쳤다.[82] 즉 스페인 부모의 약 50%, 프랑스 부모의 약 70%가 자녀의 불복종을 이유로 따귀를 때리는 행위를 아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벌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체벌을 사용하는 비율이나 체벌에 대한 태도 등에서 눈에 띄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나라 중에서도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독일 사이에는 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체벌금지의 역사 및 홍보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1979년에 친자법 개정을 통하여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체벌금지를 향한 개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그보다 훨씬 전인 1950년대부터 이미 체벌금지에 관한 개정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1979년 개정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체벌 추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체벌금지에 관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각각 1989년과 2000년에 민법개정을 통하여 체벌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개정시기가 스웨덴보다 늦었을 뿐만 아니라 체벌 추방에 관한 홍보와 캠페인도 스웨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체벌을 사용하는 정도와 체벌을 대하는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독일도 큰 틀에 있어서는 체벌금지에 관하여 스웨덴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에는 2007년 설문조사 당시에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는데, 체벌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한 앞의 세 나라(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와 비교할 때, 체벌의 사용 정도나 체벌을 대하는 태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벌금지 입법이 체벌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

80) Bussmann/Erthal/Schroth, Wirkung von Körperstrafenverboten. Erste Ergebnisse der europäischen Vergleichsstudie zu den „Auswirkungen eines gesetzlichen Verbots von Gewalt in der Erziehung“, RdJB 2008, 406f.;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14f.

81) Bussmann/Erthal/Schroth, Wirkung von Körperstrafenverboten. Erste Ergebnisse der europäischen Vergleichsstudie zu den „Auswirkungen eines gesetzlichen Verbots von Gewalt in der Erziehung“, RdJB 2008, 414;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22.

82) Bussmann/Erthal/Schroth, Wirkung von Körperstrafenverboten. Erste Ergebnisse der europäischen Vergleichsstudie zu den „Auswirkungen eines gesetzlichen Verbots von Gewalt in der Erziehung“, RdJB 2008, 418;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Familie – kein Platz für Gewalt!(?), 2009, S. 26.

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체벌금지 입법이 체벌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체벌금지 입법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와 함께 체벌 추방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이고 꾸준한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제 생활에서 체벌이 감소하고, 나아가 추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2021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징계권에 관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다.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무렵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 하나로 징계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징계권의 삭제를 계기로 체벌금지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징계권 삭제로 한국이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며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권의 삭제를 대하는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는 징계권의 삭제가 곧 체벌의 금지(징계권 삭제=체벌금지)라는 오해와 혼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징계(티브이시청 금지, 게임금지, 용돈삭감, 외출금지, 휴대폰 사용시간 제한 등)를 하는 것은 친권(양육권)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아예 자녀를 징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체벌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징계권의 삭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전에 징계권 규정이 있을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무거운 체벌은 친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며, 이점은 징계권이 삭제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는 가벼운 체벌의 허용여부인데, 이러한 수준의 체벌까지 명확하게 금지시키려면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의 예와 같이 모든 종류의 체벌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로부터 모든 종류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징계권을 삭제한 2021년 개정법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체벌이 허용되는가, 어느 정도의 체벌의 허용되는가, 아니면 체벌이 전면 금지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명확한 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법 상태에서 징계권의 삭제로 한국이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체벌금지 국가라고 칭할 수 있다면, 독일은 이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체벌금지 국가로 불렸어야 하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1966년과 1977년에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징계권 삭제 이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였을 때 비로소 체벌금지 국가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벌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가 단지 징계권의 삭제를 내세워 체벌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체벌금지 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체벌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벌금지 캠페인도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법인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체벌추방 캠페인을 실시할 때 비로소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징계권이 삭제되었다고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체벌금지 사회로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체벌금지의 명문화가 체벌금지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사회는 아직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대면상담으로, 집단상담/음주문제상담/교육강좌/자조모임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것이다.

2024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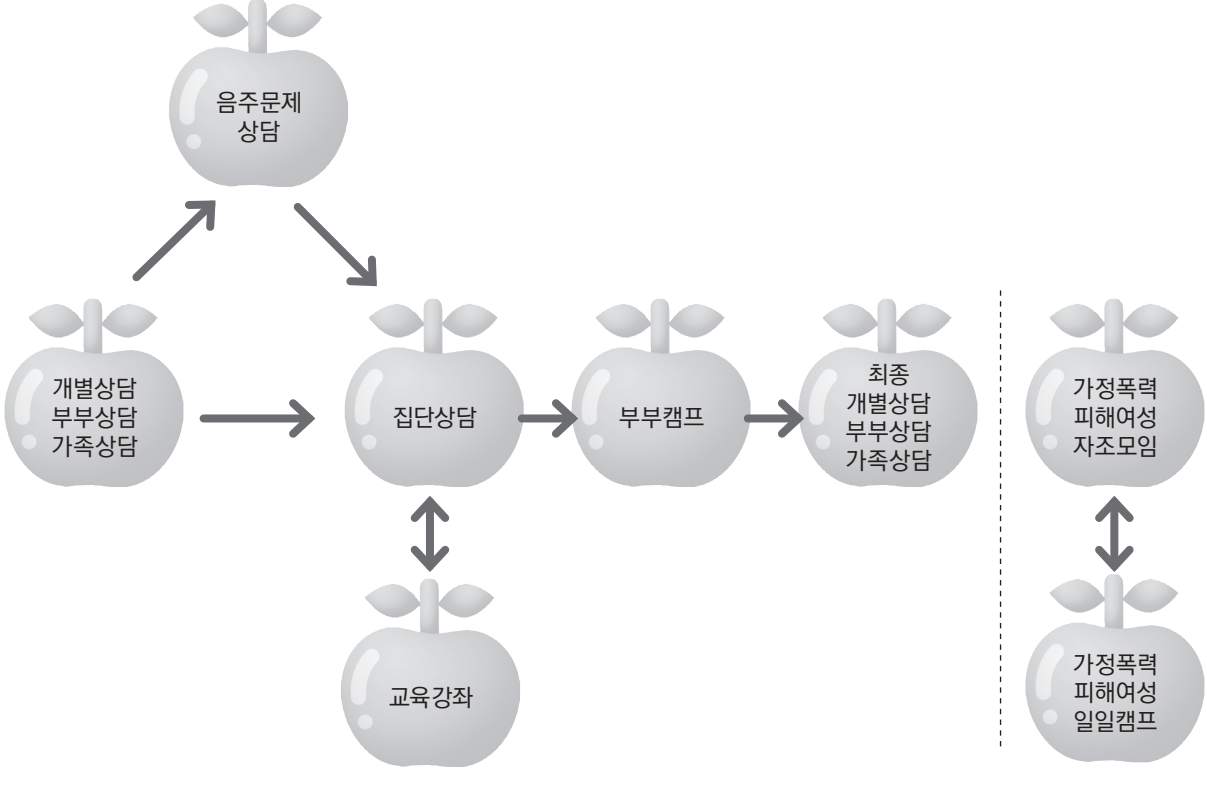

Ⅰ.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사전예약 필수)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모색

▶ 일 시 : 연중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Ⅱ. 음주문제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일 시 :연 4회(각 4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1회 : 3/8, 3/15, 3/22, 3/29 (4회기) 2회 : 5/24, 5/31, 6/7, 6/14 (4회기) 3회 : 8/23, 8/30, 9/6, 9/13 (4회기) 4회 : 11/1, 11/8, 11/15, 11/22 (4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음주와 트라우마 2회기 : 음주와 뇌 3회기 : 음주와 공동의존 4회기 : 음주와 회복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Ⅲ. 집단상담 (사전예약 필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 진 행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대표

집단상담 ②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진 행 : 정윤경 교수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정윤경 교수

김희진 교수

집단상담 ③
▶ 일 시 : 필요시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Ⅳ. 둥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교수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1월 10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라 : Stress를 Strength로① (+수용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 감정케어센터)
2월 7일	가장 적절한 것을 택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② (+선택치료)	
3월 13일	잘 한 나를 칭찬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③ (+격려치료)	
4월 17일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5월 8일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6월 12일	낼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Ⅴ.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일 시 : 연 2회
(2024년 4월 13일 ~ 14일 / 11월 9일 ~ 10일)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Ⅵ.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Ⅶ.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일 시 : 연 1회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어떻게 할까요

이 혼 ㉔

● 재산분할청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Q 문 98 |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저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남편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기 몇 개월 전에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재산분할을 해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돌려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이를 남편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의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제406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 선행된다

Q 문 99 |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니 가사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정은 무엇인지요?

A 가사조정은 당사자들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분쟁의 내용, 원인, 문제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조언과 설득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

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은 법관과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고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제2항).

●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100 |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라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재심 혹은 추완상소, 후자는 항소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심의 소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Q 문 101 | 저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에서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는 어렵게 살다가 먼저 탈북한 아이들의 뒤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도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북한의 남편과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의2에서 북한에 배우자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2). 이를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를 발급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2항).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2 제3항)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Q 문 102 | 저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와 혼인한 후 한국에 오지 않은 지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도 우리나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거소가 국내에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적도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관할

Q 문 103 | 저는 미국 유학 중 교포 2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1남 1녀를 출산하였고, 10년 전부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제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정식구도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대법원은 "미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39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

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은 귀하 부부가 법률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 주(州)의 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이 사건의 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한국 국적으로 15년 전 베트남에서 일을 하던 중 베트남 국적인 현재의 아내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중 아내는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아이를 함께 키우며 살았습니다.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며, 저와 아내는 베트남 소재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구청에서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고, 아이의 한국국적취득을 위하여 법무부에 아이의 국적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적취득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아이의 생부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아이는 부모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아이와 아내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함께 살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를 법적인 제 아이로 인정받고 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A 아버지가 친생자 아닌 아이를 인지한 것은 인지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귀하는 아이를 상대로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 아이는 미성년이므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귀하와 아내는 이미 1년 이상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아내의 자녀인 아이를 친양자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는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아이에 대한 친양자입양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므로 아이가 19세가 되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귀하의 친양자가 되더라도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민선 변호사

각각의 계절

권여선 소설

문학동네, 2023(1판 2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든 살아.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강철은 어떻게든 단련돼.
너는 왜 연극이 하고 싶어?
나는 왜든 연극이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소설을 쓸거야?
나는 어떤 소설이든 쓸거야."

(「사슴벌레식 문답」, 21~22쪽)

사슴벌레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설의 한 대목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같은 소설을 읽던 시대였다. 체르니셰프스키, 오스트롭스키 그리고 『핀란드 역까지』도 있었다.

학생회관 서클룸 – 동아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대학생이었다-에서 회관 앞 광장을 내려다보면 학생들이 모이기 어렵게 아주 부자연스럽게 놓여 진 벤치며, 어색하게 심어진 나무들이 보였다. 그리고 광장 중앙에 어렵게 마련한 강제징집 당해 사망한 선배의 추모비가 놓여 있었다. 소아마비가 있어 군 면제였는데도 녹화사업의 대상으로 군에 끌려가 죽었고 그 죽음의 시작과 끝은 해답 없는 질문으로만 남았다. 그는 대학교 3학년, 스무 살이 갓 넘은 나이였다. 이러한 강제징집 철폐를 요구하며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이 있었고, 외박을 허락받을 수 없었던 나는 아침 일찍 학생회관에 들어섰다. 추운 학생회관에서 밤을 보낸 이들이 중앙 계단 위로 몸을 내밀고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1987년 12월 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망연하게 친구와 밤길을 걸었다. 부정투표니 투표함이 어쨌니, 불온한 소문이 밤거리에 가득했고, 구로구청 옥상에 사건이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왔던 "노태건 장군"이 직선제로 치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권여선 소설집 『각각의 계절』을 읽으며 「사슴벌레식 문답」에서 「기억의 왈츠」까지 일곱 편의 소설이 각각 다르게 스산하고 서글프게 마음에 박혔다. 왜인지 울고 싶었던 위와 같은 대화가 등장하는 「사슴벌레식 문답」은 초봄 개강 직후의 썰렁한 학생회관으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군 장성인 아이가 몇 명 있었다. 그중 하나는 대학에 가서 운동권이 되었고, 다른 하나가 했다는 말은 우리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다. "군부독재 타도하면 누가 하려고, 쯧."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이들이 운동권을 타도의 대상이라 말한다. 친구 셋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정치인인 동기 아무개의 흉을 보았는데, 며칠 지나고 정치권에서 우리 세대 운동권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현실을 보았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아 뭐냐, 욕을 해도 우리가 한다고."

작가 권여선은 1965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하대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 소설집은 지난해 교보문고에서 마련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서 작가 12인에게 추천받아 1위에 올랐다.

이숙현 편집부장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4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면서 시간의 힘, 시간의 치유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시무식에서 곽배희 소장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올해도 상담소의 소명인 법률구조 사업을 잘 수행해 가자고 격려하고 이를 위해 서로 배려하며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으며 모든 직원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아침 회의를 겸해 열린 시무식은 상담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소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관련사진 2면)

이태영 선생님 25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하고 헌화하며 남기신 뜻을 새겨

2023년 12월 15일에는 지난 1998년 12월 17일 영면에 드신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5주기를 기려,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조촐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곽배희 소장과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려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선생님의 소중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검찰청과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위해 협업체계 구축 이원석 검찰총장 등 본소 방문해 협약식 가져

지난 2023년 12월 18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본소와 대검찰청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조경애 본소 법률구조1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은 개식 및 참석자 소개, 본소 곽배희 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말씀,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협약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검찰총장과 상담소장의 업무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상담소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한 처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법률복지 증진에 가일층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오늘 협약으로 검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등의 영역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검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소와 대검찰청의 업무협약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협조를 본소에 요청하고, 본소는 대상자를 상담하고 백인변호사단과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박향철 공판2과장, 박찬영 검찰연구관 그리고 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김민선 · 박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관련사진 2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대상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4학년 대상 '아동가족과 법' 수강생 30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본소의 법률구조사업과 법률구조사례 그리고 가족법개정운동사와 관련해 강의하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복미영 상담위원의 진행으로 본소 사진 전시실 관람 등이 이루어졌다.

2023년 1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028			
법률상담 (3,499)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897	2,515	81	6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89	27		13

• 인터넷 정보 이용 112, 865 건

2023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02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99건(86.9%), 화해조정 489건(12.1%), 소장 등 서류작성 27건(0.7%), 소송구조 13건(0.3%)이었다.

법률상담 3,49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11월에 비해 부부갈등(2.9%→4.6%), 이혼(20.8%→23.8%), 사실혼해소(1.0%→1.2%), 위자료·재산분할(5.8% →7.0%), 친권·양육권(4.0%→4.1%), 부양(0.5%→0.9%), 가족관계등록부(2.1%→2.3%), 친양자(0.5%→0.6%), 파산(2.4%→2.9%), 형사기타(0.4%→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9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97건(25.6%), 전화상담 2,515건(71.9%), 인터넷상담 81건(2.3%), 지상상담 6건(0.2%)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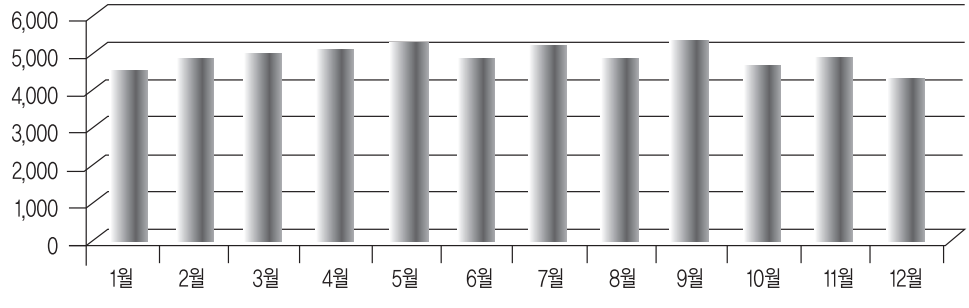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본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2023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대나 폭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본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8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14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28일 상담소에서 애란세움터 양혜경 원장과 종전의 애란원과의 업무협약을 애란가족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으로 변경하여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7일과 14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1일에는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주최 임상법학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김소이,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이고은, 박인아, 김지오, 이지민, 이재영, 김상은, 이현아, 정재은, 김영인, 한아름, 김지원, 이은세, 고원진, 전승희, 박진희, 서민지, 남계목, 최성은, 강민서, 서혜린, 조은수, 한승헌, 최신양, 김정민, 홍준화, 서유진, 이혜원, 김민선, 김예지, 최지현, 송유림, 하유지, 이유정, 김혜진, 이준호, 최준영, 이동희, 원서영, 최문경, 손예린, 장주원, 문정현, 신영혜, 전성희, 고세현, 박민제, 최민서, 김성은, 문시원, 노현정, 김다솔, 서현진, 나단비, 이양현, 류채현, 김선욱, 김연주, 이재영 님

후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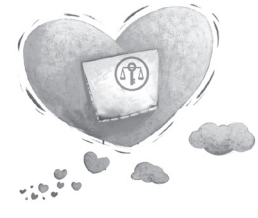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양병회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법률구조 2023-1-6, 4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5세, 이하 사건본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고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위탁모는 아동보육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생후 1개월경인 사건본인을 만나 해당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전담하여 양육하였다. 이후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본인을 보살피다 2022년 가정위탁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2022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위탁부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건본인은 위탁부모와 그들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탁부모는 친자녀들을 양육한 방식대로 사건본인을 차별 없이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양육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위탁부 및 위탁부모의 친자녀들과 달라 사건본인이 향후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 될까 염려하였다. 이에 사건본인의 위탁부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3-1-6(제1심) : 기각(서울가정법원 2023.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23-1-47(제2심)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11. 30.)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3-1-180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40대)은 2016년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7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19년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신청인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감치신청을 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수입이 적지만 향후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여 감치처분을 면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사건본인들을 홀로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0. 1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호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외도와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 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3-1-206

담당 : 최윤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일을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더니 어떤 여성의 권유로 도박에 빠졌다며 원고에게 도박 빚을 갚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원고의 소득 일부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시로 보내주었다. 2014년경 피고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살 곳이 없어 원고의 작은 가게에서 생활해야 했다. 밤이면 신문지로 창문을 가리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패딩을 입고 연탄불을 피워가며 잠을 잤다. 한편 이 무렵 피고는 집을 나가 내연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과 지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피고에게 간청하였다. 피고가 돈을 입금해주면 돌아가겠다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2.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3-1-420

담당 : 성수민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50대)와 채무자(남, 50대)는 2021년 재판상 이혼하며, 당사자간에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채권자로 지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미성년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를 조회하였고, 상대방에게 급여소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24.)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230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며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신청인은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기획부동산 업종에서

근무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배우자와 항상 경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도 약 14년 동안 기획부동산 일을 계속하다가. 2020년경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소득이 끊긴 신청인은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고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웠다.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며 오 갈 곳이 없어 국가의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5,6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대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209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1997년경 신용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IMF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다. 이후 고향에 내려가서 신용대출을 받아 염소 10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였다. 그렇게 염소 개체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중, 염소 40여 마리를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여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경 신청인은 섬유 및 의류 제조공장을 구해 수출업을 시작하였다. 별 탈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신청인은 채무는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 생산·수출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고,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이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 신청인은 뇌경색을 앓으면서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없게 되어 소득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2월 휴강)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4년 8월 중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둥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1월 10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라 : Stress를 Strength로① (+수용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 감정케어 센터)
2월 7일	가장 적절한 것을 택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② (+선택치료)	
3월 13일	잘 한 나를 칭찬하라 : Stress를 Strength로③ (+격려치료)	
4월 17일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5월 8일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6월 12일	낼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 · 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 · 면책 · 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상하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겨울, 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 밝고 따뜻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함께 나누며 내일을 향해 갑니다.

새해, 창립 68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영광과 소임을 깊이 새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나 상담소에 대해 보내주시는 깊은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상담소의 모든 역사가 가능했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자 하는
상담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고,
아울러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